

1. 개정이유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을 “인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u>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u> <u>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u> <u>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u> <u>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u> <u>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u> <u>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u> <u>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u> <u>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u> <u>항 본문에 따라 읍·면 지역에</u> <u>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u> <u>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u> <u>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u> <u>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u> <u>소를 설치·운영하는 시장·구</u> <u>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u> <u>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u> <u>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u> <u>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u> <u>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u> <u>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u> <u>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u> <u>있다.</u> ②·③ (생 략)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 ----- <u>인구</u> ----- ----- ----- ----- ----- ----- ----.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